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신현영·김정호·소병훈

고영인 · 홍성국 · 김병욱

유정주・김원이・허 영

이낙연 · 조승래 · 우원식

홍정민 · 권인숙 · 송갑석

이성만 · 서동용 · 김홍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민법상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기도함.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15조 삭제).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 ユ 子	<u><삭 제></u>
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	
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